

97. 9. 4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6호, 97. 8. 20)

사 천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6호, 97. 8. 20)

1. 심사경과

가. 97. 8. 20. 사전시장 제출

나. 97. 9. 1.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다. 97. 9.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총무국장 박종수)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동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 2, 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승인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세 계 잉 여 금		
				계	이 월 금	순잉여금
합 계	165,735,954	164,385,265	119,443,685	44,941,580	32,515,683	12,425,897
일반회계	142,914,813	141,194,346	101,643,320	39,551,026	31,078,620	8,472,406
특별회계	22,821,141	23,190,919	17,800,365	5,390,554	1,437,063	3,953,491

3. 검토보고(전문위원 조영규)

가. 주요 검토사항

1) 일반회계

가)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	결손처분액	미납액 (이월액)
합 계	142,914,813	143,194,450	141,194,347	98.6	23,234	1,976,869
지 방 세	16,020,410	17,412,980	16,625,248	95.4	23,234	764,498
내외수입	33,993,029	34,658,923	33,446,552	96.5	-	1,212,371
지방교부세	47,425,000	47,425,000	47,425,000	100	-	-
지방양여금	9,799,987	9,799,987	9,799,987	100	-	-
보 조 금	34,026,387	33,897,560	33,897,560	100	-	-
지 방 채	1,650,000	-	-	0	-	-

나) 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합 계	128,116,525	142,914,813	101,643,320	31,078,620	10,192,873
일반행정비	33,790,712	34,932,750	30,273,366	1,802,359	2,857,025
사회복지비	54,205,673	65,471,124	39,685,668	22,644,659	3,140,797
경제개발비	35,637,843	38,082,040	30,742,851	6,587,392	751,797
민방위비	674,012	674,012	511,509	44,210	118,293
지원및기타경비	3,808,286	3,754,887	429,926	-	3,324,961

2) 특별회계

가) 세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정수결정액	수 납 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2,821,141	23,741,495	23,190,919	0	550,576
상수도사업	9,657,326	10,071,320	9,992,558	0	78,762
하수도사업	261,158	275,454	266,518	0	8,936
주 택 사 업	296,659	319,195	298,712	0	20,483
토지구획정리사업	2,575,482	2,581,556	2,581,556	0	0
의료보호기금	2,626,855	2,633,432	2,623,100	0	10,332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35,134	334,300	310,019	0	24,281
새마을소득금고운영	439,425	439,425	423,467	0	15,958
중소기업육성사업	47,258	46,293	46,293	0	0
농공지구조성사업	3,879,210	4,330,923	3,939,099	0	391,824
이주대책사업	1,810,299	1,818,636	1,818,636	0	0
발전소주변지역사업	893,335	890,961	890,961	0	0

나) 세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계	22,821,141	17,800,366	1,437,063	3,583,712
상수도사업	9,657,326	7,718,169	1,061,307	877,850
하수도사업	261,158	206,909	0	54,249
주택사업	295,659	139,883	0	155,776
토지구획정리사업	2,575,482	710,192	129,600	1,735,690
의료보호기금	2,626,855	2,623,100	0	3,755
저소득주민생활안정	335,134	156,295	0	178,839
새마을소득금고운영	439,425	196,000	0	243,425
중소기업육성사업	47,258	0	0	47,258
농공지구조성사업	3,879,210	3,691,124	0	188,086
이주대책사업	1,810,299	1,721,952	0	88,347
발전소주변지역사업	893,335	636,742	246,156	10,437

3)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1) 예산이용 : 없음

2) 예산전용 : 640,000천원(생활환경개선사업비)

3) 예산이체 : 없음

4) 계속비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사 업 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1992. 1. ~ 1998. 2.	16,808,182	6,388,966 (38%)	10,419,216	0

5) 예비비 결산

(단위 : 천원)

회 계 별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지 출 일	사 유
일반회계	손해배상금	53,399	53,399	96. 9. 18	배상금 지급

6) 채권채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본 년도말 현재액
채 권	13,272,448	△640,114	12,632,334
채 무	27,609,038	△1,713,274	25,895,764

7)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현재액
	증	감	
19,487,627	7,209,292	227,822	26,469,097

8) 물품 현황

(단위 : 천원)

정 수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현재액
		취 득	처 분	
1,487개	2,481,821	971,404	219,033	3,234,192

나. 종합의견

- 결산이란 예산을 집행한 결과의 성과에 대한 실적보고서로서 예산이 사전적 승인이라면 결산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사후 재정 보고이나
- 의회가 당초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 금후의 행정, 재정 운영에서 어떠한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인가를 파악하는데 심사의 착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97. 7. 21 ~ 8. 9(20일간)에 걸쳐 감사위원의 전문적이고 면밀한 검사를 거쳐 작성된 자료로서 사고이월 사업 과다 발생 등 총 12건의 시정 및 개선조치 사항은 향후 예산집행시 꼭 시행되도록 촉구하고 원안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배상근 의원	○ 307쪽의 배상금 53,399천원 지급 내용 상세히 설명 바람	기 회 담당관 최문섭	○ 서금대립지 난간 미설치로 자동차가 바다에 추락한 사건에 대한 배상금임.
문기호 의원	○ 채무액이 약 3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채무액이 더 늘어날 것인지 ?	"	○ 지금 현재 채무액이 더 늘어날 예측은 없고 기채는 상수도사업외는 별로 없음. ○ 연차적 계획대로 갚아나가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일삼 의원	○ 결산서를 집행부에서 작성하였지만 감사위원을 의회에서 위촉하여 전문가적인 감사를 마쳤음. ○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가 되었는지? ○ 별다른 질의가 없으면 감사위원의 검사결과를 믿고 질의를 종결함이 좋겠음.	총무국장 박 중 수	○ 이 안이 승인된 후에 조치 계획임.
조문래 의원	○ 166쪽의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중 불용액이 약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의 사유는?	기획담당관 최 문 섭	○ 구체적인 사업명은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담당 실과소의 예산 요구에 의해서 예산 배정하였음. ○ 예산편성에 참고하겠으며, 경상경비보다 사업예산에서 이런 경우가 많음.
조문래 의원	○ 이월비가 별도 있는데도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환경국장이 답변하기 바람. ○ 국도비보조금 반납 사유 서면 제출 요구함.	사회환경 국 장	○ 개개사업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 대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 대상자의 변동에 의한 것임.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수성 의원	○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101 건에 310억원 정도의 사업이 이 월되었는데 97년 9월 현재 10% 의 진도를 보이는 사업이 있음. 이런 사업은 실적이 부진하지 않았는지 담당 실·과장이 사업 진척을 챙기기 바람.		
조재일 의원	○ 곤명상수도시설 사업이 공기 ·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 정곡이주단지의 물부족에 대 한 대책은 ?	건 설 도시국장 신용학	○ 곤명상수도시설 공사는 300 ~ 2,000톤 공급시설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음. ○ 완사, 금성까지는 충분한 양 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공사하 고 있음. ○ 정곡이주단지는 수일내로 충분한 양을 공급토록 조치 하겠음.

5. 토론요지 : 토론자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